

Hegel 政治哲學의 根本課題

—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을 中心으로—

李 壽 允

<目 次>

※문제의 제기

제1장 特殊性으로서의 市民社會

제1절 所有

제2절 福祉

제2장 普遍性으로서의 國家

제1절 具體的 自由

제2절 自主國家

제3장 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過程으로서의 世界史

제1절 抽象的 普遍性의 段階

제2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直接的 예술적 統一의
段階

제3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分裂의 段階

제4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具體的 統一의 段階

問題의 提起

Hegel 政治哲學의 具體的 意味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恒常 問題되어 왔다. 政治哲學의 關心을 갖는 사람은 누구나 그 自身의 취향과 觀點에 立脚해서 自己의 主張과 一致하는 Hegel을 發見하려고 한다. 그래서 「Hegel體系의 研究家에 依한 Hegel에 對한 해석들은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처럼 다양하다」¹⁾ 따라서 Hegel을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극단적인 일방적 觀點보다도 綜合的 중庸적 견지에서 그의 理論을 分析하는 것이 妥當한 方法이라고 생각할 수

1) Wallace, prolegomena to the study of Hegel's philosophy and especially of his Logic Oxford, 1892. p. 1.

Hegel政治哲學의 根本課題

있다. Hegel은 한편으로는 Prussia의 어용학자로 간주되어 保守主義的 政治哲學者로 認定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辩證法을 앞세워 Hegel을 급진적 理論을 지원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있다. 그러나 事實上의 Hegel은 保守主義者도 아니었고 急進主義者도 아니었다. 그의 政治哲學은 進步와 保守를 다같이 包括하고 있는 것이요 이를테면 漸進的 改良主義 哲學이라고 볼수 있다. 이點은 Hegel의 實踐論이라고 볼수 있는 法哲學序文의 有名한 「理性的인 것은 現實의이고 現實의인 것은 理性的이다」는 命題를 보면 正確히 알수 있다. 이 命題의 앞부분은 理性과 傳統의 對立과 統一에 있어서 理性의 우위를 確立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뒷부분은 理性과 傳統의 具體的 統一은 急進의인 과격한 方式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現實的 토대위에서 不合理性의 修正에 依한 漸進的 改革에 立脚해야만 한다는 것을 主張한 것이다. Hegel은 「아무리 결점이 많은 관습적 습관적 制度라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對해 支配力を 維持하고 있는限 그것이 急進的으로 除去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制度가 그 理論에 있어서 아무리 完全하더라도 처음에는 舊制度와 同一한 복종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될때에는 전혀 效果的 統治가 缺如된다는 것을 發見할 것이다」²⁾는 것을 確信하고 있다. 그리하여 Hegel은 「격렬한 大衆行動이 憲法的 構造를 理性化하는 만족할만한 手段이라는 것을 拒否했고 이改革活動의 根本主流를 政府나 國會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憲法的 手段에 依한 漸進的 改革만이 現在 存在하는 制度와 理性의 法則과의 和解에 있어서의 最上의 方法」³⁾라고 밀었던 것이다. 결국 Hegel은 進步와 保守의 對立에 있어서 Aristotales의 중庸의 立場을 取하였다. 「Hegel은 政治的 理想主義나 實證的 現實主義에 너무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똑같이 止揚할 것으로 불란서 革命을 通해 얻은 가장 큰 經驗은 이 양극단은 回避되어야 한다는 것 이였다고 생각하였다.」⁴⁾ 理性의 法則은 確固한 制度의 具體性속에서 이를 通해 實現되어야 하고 存在하는 實定法은 理性의 빛에 依해 檢討되고 修正되어야 한다. Hegel은 主要 Europe國家들 中에서 獨逸만이 經驗에 依해서 實제적 정부의 지혜와 理性的 理論의 原理와의 結合의 비밀을 배웠고 큰 利益을 얻었다고 確信했다. Hegel은 이점에 있어서 獨逸, 영국, 불란서를 比較하는 데 불란서는 自由와 平等이라는 抽象的 理想에 휩쓸려 주기적인 不安의 희생이 되었고 英國은 선거법 論爭이 政治的 理性主義의 호소가 始作되었다는 表現이긴 하지만 實定的 原理에 완강히 집착해 있으며 獨逸만이 理性에 進步

2) Knox; Hegel's political writing, Oxford, 1964. p. 41.

3) ibid: p. 42.

4) ibid: p. 43.

해 가면서 안녕과 질서를 保護하는 方法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불란서에 있어서는 理性的 理念은 다른 많은 抽象的인 것과 혼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極端한 社會的 혼란과 연결되어 있다. 그 理念들은 獨逸에 있어서는 오랜동안 內的인 確信과 여론의 고정된 原理가 되어 舊封建的權利의 平和的, 漸進的 그리고 法的인 改革을 實現하였다. 그 結果 여기서는 實재적 自由를 制度化하는데 상당한 進步가 있었다. 英國에 있어서는 貴族의 特權, 實定法的 制度와 大陸의 개화된 國家에서 헌법화된 權利와 法律, 普遍的 理性에 根據한 原理의 差異가 그 만큼 큰 것이다.」⁵⁾ 이와같이 불란서는 抽象的 理性主義에, 英國은 實證的 傳統主義에 입각하여 있는 동안 獨逸만이 이 兩者的 結合을 通해서 漸進的 改革을 實現했다고 Hegel은 보았다. 이러한 見解하는 實證的인 法體系를 理性的인 體系로 바꾸는 唯一하고 만족할만한 方法도 現在存在하는 政府기구를 通해서만 可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Hegel은 이와같이 平和的이고 漸進的이며 憲法的 制度的 改革을 強力히 옹호했다. 이러한 그의 現實主義的 性格은 政治指導者에 對한 그의 見解에 있어서도 明確히 나타난다. 「政治的 指導者에 대한 理念은 Hegel에게 있어서는 Platon과 相異하다. Platon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란 理念으로 부터 빛을 받아 啓發된 사람 이었다. 그는 동굴의 어둠속에 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의 빛을 傳해야 하는데 그 빛을 그는 피안에서 直觀한 것이다. Hegel에게 있어서는 政治的 指導者는 歷史的으로 現實的인 것에 뿌리를 박고 客觀的 精神이 이미 存在하는 傾向속에 있어서의 本質的인 것을 통찰하고 이것을 言及하는 것이다. 그는 먼곳에 있는것을 파악하지 않고 現在속에서의 實體的인 것을 파악한다」⁶⁾ Hegel에 있어서는 存在하는 現實的인 것은 理性이기 때문에 存在하는 現實의 인 것을 概念으로써 把握하는 것이 哲學의 課題이다. 自覺하는 精神으로서의 理性과 現在 存在하고 있는 現實로서의 理性과의 사이에 있는 것, 앞에 있는 理性을 뒤에 있는 理性과 나누고 후자가운데서 만족을 發見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개념에 까지 解放되어 있지 않은 抽象的 態度의 結果이다. 理想을 現實의 十字架에 있는 장미라고 인식하는 그것에 따라서 現在를 기뻐하는 것, 이 理性的 통찰이야말로 哲學이 사람들에게 일게 하는 現實과의 和解이다」⁷⁾ 이와같이 Hegel은 現實和解主義, 現實主義的 立場에 서고 있다. 그리하여 「國家에 관해서는 肯定的인 面을 理解하기 보다는 現存하는 國家의 결함을 發見하기 쉽기 때문에 國家의 個別的인 面을 넘어서서 國家자신이 内면적 有機體라

5) ibid: p. 325.

6) Nicolai Hartmann; Der philosophische Gedanke und Seine Geschichte, Stuttgart, 1955, p. 152.

7) Hegel;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1952, p. 35.

Hegel政治哲學의 根本課題

는 것을 망각하는 잘못에 빠지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國家는 人爲的인 예술 품이 아니다. 國家는 大地위에 있고 따라서 偶然 오류가 國家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人間이라도 역시 生命을 가진 산 人間인 것처럼 모든 그 결합에도 不拘하고 肯定的인 生命的인 國家는 存立하는 것이고 이런 肯定的인 것이 「우리의 問題」⁸⁾라고 確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地上의 神이라고 규정한 國家가 行하는 바의 實踐的內容은 무엇인가 그것은 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이다. 「國家에 있어서 모든 것은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에 달려 있다.」⁹⁾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은 個別性을 뜻하며 원래 이러한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로서의 個別性은 기독교적 原理에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기독교적 세계의 歷史는 個別性이라는 기독교적 觀念의 實現의 歷史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¹⁰⁾라는 말이 생긴다. Hegel에게 있어서는 이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의 主體가 國家이며 또한 그의 政治哲學의 根本課題는 바로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以下에서 이에 對해 자세히 論해보기로 한다.

제1장 特殊性으로서의 市民社會

제1절) 所 有

Hegel政治哲學에 있어서 市民社會는 特殊性(利己主義)를 原理로 한다. 市民社會에 있어서는 個人 自身의 慾求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具體的 人格이 主題로 된다. 「市民社會에 있어서는 各人이 自身에게 있어서 目的이며 其他一切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無인 것이다」¹¹⁾ 그리하여 市民社會에서는 各人은 特殊對 特殊로서 對立한다. 그런데 人間의 慾求는 限定位이 없으며 이 慕求를 만족시키기 為하여 人間은 勞動한다. 그러나 自己個人의 勞動만으로서는 自身의 慕求를 완전히 充足시킬수 없으므로 여기에 必然的으로 勞動의 分業이 結果하게 된다. 慕望의 充足을 為해서 人間은 계속적으로 그의 必要를 만들어 내어 마침내 勞動의 分業에 依하여서만 그의 慕求充足이 可能하게 된다. 「發展된 勞動의 分化는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依存하게 하고 그래서 한 個人的生存, 안녕, 現存은 다른 모든 사람의 生存과 안녕과 權利에 必要不可缺하게 엉켜 있는 것이다」¹²⁾ 이 增加하는 모

8) ibid. §258. Zusatz.

9) ibid. §261. Zusatz.

10) Koje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Tr. by James H. Nichols. New York 1969) p.66.

11) Hegel; op. cit. §182.

12) Seeberger; Hegel oder die Entwicklung zur Freiheit Stuttgart, 1961. p. 609.

哲學論究

는 行動의 專門化가 全體의 分化를 促進하는 것으로 外觀上 보일지라도 事實은 점점 內的으로 全體의 統一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必要와 生產과 分配의 協同化를 媒介로 하여 市民社會의 特殊性이 하나의 普遍性으로 轉化하여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特殊的 人格은 勞動의 分業을 媒介로 해서 本質的으로 他人의 特殊的 人格과 서로 關聯하여 普遍性이라는 新로운 形式을 받아 들이게 된다. 市民社會에서는 各人은 私利私慾의 추구에 광분하지만 실은 보편성의 형식에 따르지 않으면 그目的을 實現할 수 없다. 그리하여 特殊性은普遍性에 依해서 制約되어 全體가媒介의 地盤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個別的인 素質出生等과 같은一切의 偶然性이 마음대로 行動하고 모든 情熱이 구비치지마는 어디까지나普遍性에 依하여 制限된 特殊性만이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市民社會에 있어서는 特殊性과普遍性과는 서로 分離되어 있으면서 그대로 여전히 서로 制約하고 있다. 한쪽은 다른便에 反對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편을 멀리하는것으로써만 存在할수 있다고 確信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 어느쪽도 서로를 自己의 條件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市民社會의普遍性은 아직 特殊性의 內面의 基礎일 뿐이며 따라서 이普遍性은 단지 形式的 存在에 지나지 않는다.]¹³⁾ 市民社會는 人倫의 상실상태이다. 人倫의 理念은 이 分裂態에 있어서는 特殊性과普遍性의 두가지 契機에 각각 獨自的인 現存在를 부여한다. 즉 特殊性에게는 모든 方面에 發展해서 마음대로 活動하는 權利를 주고普遍性에게는普遍性이야 말로 特殊性의 根據임과 同時에 必然的 形式임을 實證한다. 그래서 市民社會에서 活動하는 特殊的 人格의 內容은 自身의 慾求이고普遍性은 단지 形式에 지나지 않는다. 이 形式的普遍性은 첫째로 各人の 慾求追求로서의 經濟活動이 조성하는 바의 社會的 聯關으로서의 慾求의 體系이요 그 가운데서 作用하고 있는 經濟法則이다. 둘째로 萬人에게 추상적으로 慾求充足的 活動을 保障하는 司法活動에서 定立된 여러 權利이다. 따라서 「市民社會는 獨立한 個個人의 成員들의 形式的普遍性에 있어서의 結合態이고 여기에 成員들의 慾求와 人格과…安全을 保障하는 手段인 法律體制가 介入해서 그들의 特殊利益과 共同利益을 為한 外面的 秩序를 이루는 그러한 結合體가 된다」¹⁴⁾ 그런데 特殊의 人格의 內容을 이루는 主觀的 慾求가 그것의 客體性 즉 만족에 到達한다는 것은 내가 外物을 所有한다는 事實에 依하는 것이고 또한 慾求의 만족을 實現하는것으로서의 活動과 勞動에 依하는 것이다. 個個人의 勞動에 依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의 勞動에 依해서 慾求를 만족시키는 慾求의 體系는 主觀的 特殊

13) Hegel; op. cit. §184.

14) ibid. §157.

性의 意志가 所有를 爲해 活動과 勞動을 하고 外的 事物을 所有하는 것을 말 한다. 「慾求의 體系의 原理는 知와 意志의 作用自體의 特殊性이므로 即自且 對目的으로 存在하는 普遍性을 다만 抽象的으로 所有의 權利로써 內包하고 있음을 뿐이다.」¹⁵⁾ 그러나 여기에서의 所有의 權利는 이미 단순히 即目的으로 存在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効力を 가진 現實性에 到達해 있으며 司法活動에 依한 所有의 保護로써 存在한다. 自由意志는 그것이 언제나 抽象的으로 머물지 않기 爲해서는 제일먼저 自身에게 하나의 現存在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現存在의 最初의 感性的인 材料는 모든 物件 즉 外的인 物體이다. 그래서 自由의 最初의 存在方式은 所有인 것이다. 「自由라고 하는普遍的인 것을 광의로 해석하면 그것은 所有權이다」¹⁶⁾ 自由意志로서의 나는 外的 事物의 所有로 因해 비로서 現實的인 意志이다. 「나의 意志는 自身의 것으로서의 所有에 있어서 人格的이다…따라서 所有는 이 意志를 人格的인 것으로 한다. 나는 所有에 依해서 나의 意志에 現存在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所有는 또한 이것 즉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니게 된다」¹⁷⁾ 그래서 人間은 누구라도 自身의 것으로서의 所有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司法活動이란 바로 이 所有權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他者가 個人的 人格으로서의 所有權을 侵犯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다. 「財產의 安全保障이 가장 要點이며 주축이다. 이 주축을 中心으로 全體의 法이 回轉한다. 모든 法은 財產의 安全에 關한 것을 中心으로 하고 財產의 保障에 귀결된다. 모든 市民의 대개의 權利는 이것과 關係되어 있다」¹⁸⁾ 그러나 司法活動에서 보호받는 權利는 단순히 限定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關係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保護하는 것 뿐이다. 여기서는 福祉는 外面的인 것이다. 그러나 福祉야 말로 市民社會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本質的 內容이다.

제2절) 福祉

勞動의 分業에 依한 萬人의 依存關係라고 하는 全面的인 爭權 속에서 市民社會는 普遍的 資產을 形成해 간다. 그런대 普遍的 資產에 參與해서 그 配分을 받을 可能性 즉 個個의 特殊的 資產은 한편으로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直接的 基礎財產에 依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技能에 依해서 制約되어 있다. 그리고 이 技能은 그自身 및 財產以外의 偶然的 事情에 依해 制約되어 있다. 이 多樣한 偶然的 事情이 그 自體로 이미 不平等이었던 천부의 身體的

15) ibid. §208.

16) ibid. §208.

17) ibid. §46 Zusatz.

18) Jahannes Hoff meister; Dokument zu Hegel's Entwicklung, Stuttgart, 1936. p. 268.

精神的 素質을 그 發達에 있어서 틀리게 한다. 그 結果 그것은 모든 個個人의 財產과 技能의 不平等을 必然的으로 招來한다. 이 段階에 있어서는 各者가 自身의 것으로서의 所有를 가질것을 要求하는 것 뿐이다. 「特殊性이란 오히려 不平等한 것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바의 것이며 따라서 平等쪽이 여기서는 오히려 不法이다」¹⁹⁾ 이래서 特殊性으로서의 主觀的 意志의 活動으로 因해 市民社會 成員들 사이에 所有의 差異가 必然的으로 나타난다. 「市民社會가 妨害없는 活動狀態에 있을때는 市民社會는 富의 蓄積을 증대한다…그러나 이것은 一面이다. 他面에서는 特殊的 勞動의 個別化와 융통성없는 일이 增大함과 더불어 이 勞動에 귀속되어 있는 계층의 예속과 궁핍이 增大하고 이것에 關聯해서 이 계층은 그밖의 온갖 能力, 特히 市民社會의 精神的 편익을 贸易할 能力を 상실한다」²⁰⁾ 이래서 이 계층은 一定한 生計규모 以下로 영락한다. 그래서 權利感情, 적법감정, 自己의 活動과 勞動에 依해서 生活을 維持한다고 하는 궁지의 감정을 상실할 정도로 전락케 되어 「한편으로는 賤民의 發生을 야기시키고 他方에서는 同時에 不均衡한 富가 少數者의手中으로 集中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²¹⁾ 즉 「市民社會는 그 固有하는 經濟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빈곤의 과잉과 賤民의 發生을 막기에 充分하지 못하게 된다」²²⁾ 이와같이 「慾求의 體系에 있어서는 個個人 各者の 生計와 福祉는 하나의 可能性으로서 存在할 뿐이고 그 現實性은 個個人의 慾意와 自然的 特殊性에 依해서 制約되어 있고 司法活動에 있어서는 所有와 人格性에 대한 侵害가 보상될 뿐이다. 그러나 特殊性에 있어서의 現實的인 權利는 人格과 所有의 妨害될수 없는 安全이 成就되는 것을 要求하는 것 뿐만 아니라 個個人의 生計와 特殊的 福祉가 權利로서 취급되고 實現되는 것을 要求한다」²³⁾ Hegel은 福祉를 法哲學 제2부 道德에서 論했으나 「道徳의 固有한 場은 市民社會」²⁴⁾인 까닭에 生活權으로서의 福祉가 진정 問題되는 것은 市民社會에 있어서이다. 원래 人間이 市民社會의 一員일수 밖에 없음으로 市民社會는 普遍的 家族이라는 性格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人間은 家族에 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 同一한 權利와 要求를 市民社會에 對해서도 갖는다. 그러므로 市民社會는 그 成員을 保護하고 成員들의 權利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確實히 모든 個個人은 一面으로는 自身의 힘으로 獨立하고 있으나 다른 面에서는 역시 市民社會라고 하는 體系속의 成員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市民社會로부터

19) Hegel; op. cit. §49.

20) ibid. §243.

21) ibid. §230.

22) ibid. §245.

23) ibid. §230.

터 生計의 자료를 바라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限 市民社會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며…한사람의 賤民까지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市民社會는 모든 個人을 기를 책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편달하고 生計의 길을 세우게 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²⁵⁾ 따라서 그 구성원의 貧困을 除去하는 것은 市民社會의 한 課題이며 이 課題의 해결을 通해 그들의 生活權, 生計를 確固히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한 「福祉政策的 關心이 市民社會의 特殊性 속에 包含되어 있는 普遍의인 것을 實現하고 維持한다」²⁶⁾ 福祉政策的 關心은 바로 市民社會에 있어서 正義의 問題와 純粹 關係가 있는 것이다. 「確實히 正義는 市民社會에 있어서 重要한 것이다」²⁷⁾ 그런데 Hegel 있어서의 正義는 所有와 福祉의 統一을 意味한다. “正義를 세우기 위해서는 自由의 축복을 보장하고 福祉를 증진해야 한다”²⁸⁾ 여기서 자유의 축복은 所有를 의미한다. 따라서 慾求의 體系와 司法活動에 있어서 偶然的 條件에 依해 結果된 不平等은 平等性으로 止揚되고 人間이 누구나 人格으로서만 認定되는 명목적인 所有權만이 아니라 具體的, 現實的인 個個人의 實質的인 生活權을 確保하려는 것이 福祉行政의 課題라고 할수 있다. 福祉行政이 行하는 배려는 「市民社會의 特殊性 속에 內包되어 있는 보편적인 것을 모든 特殊의인 目的과 利益을 가지고 있는 大衆을 保護하고 安全하게 하기 爲한 하나의 外的 秩序 및 對策으로서 實現하고 또 維持한다」²⁹⁾는 것이다. 그리하여 「市民社會에서 각各의 個人은 全體의 福祉 속에서 自己의 特殊한 福祉를 추구하고 發見해야 한다.」³⁰⁾ 또 「自身의 內在的 利益 속에 있는 이 普遍의인 것을 自己의 意志와 活動의 目的으로 삼는데서만 倫理的인 것이 市民社會로 되돌아 오는 것이며 이것을 實現하는 것이 職業團體의 使命인 것이다.」³¹⁾ 그러나 生計와 福祉를 保障하고 所有와 人格性을 安全하게 하는 普遍者의 위력은 그 어느쪽 目的에 있어서도 特殊的 意志가 변함없이 原理인 以上一面으로는 그 힘이 미치는 範疇를 偶然의인 것으로 局限시켜 두고 他面으로는 여전히 外的 秩序인데서 머물고 있다.」³²⁾ 그리고 職業團體의 目的을 制限된 有限한 것임으로 이 目的은 自身의 真理를 卽自且對自的으로 存在하는 普遍的 目的 속에서 그 리고 이 目的의 絶

24) ibid. §207.

25) ibid. §240.

26) Willy Woog; Hegel und Hegels the Schule, Mucichen, 1910. p. 333.

27) Hegels op. cit. §229.

28) Walter Kaufmann: Hegel; a reinterpretation Anchor Book New York 1966. p. 266.

29) Hegel, op. cit. §249.

30) Carl Moriz Kahle; Die Speculative staats Lehre Berlin 1845. p. 142.

31) Hegel, op. cit. §249.

32) ibid. §231.

對的現實性 속에서 가진다.³³⁾ 이 即自且對目的目的이란 바로 絶對普遍性을 原理로 하는 國家의 目的이며, 따라서 真正하게 福祉를 實現하여 所有와 福祉의 統一 즉 特殊와 普遍의 辭證法의 統一을 이루하는 것이 真正한 具體的自由이며 이 具體的自由는 國家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즉 國家는 所有와 福祉의 統一을 달성하는 唯一의 條件인 것이다.

제2장 普遍性으로서의 國家

제1절) 具體的自由

「國家는 具體的自由의 現實性이다. 具體的自由란 人格的個別性과 그것의 特殊의 利益이 남김없이 發展하여 그것들의 權利가 그 自身으로서 獨立的인 것으로 承認됨과 同時に, 그것이一面에 있어서는 그自身을 通해서普遍的인 것의 利益으로 變하고 다른面에 있어서는 自己스스로 同意해서普遍的인 것을 承認하고 그自身의 國家적 目的으로서의普遍的인 것을 為해 일한다는 것에 있다」³⁴⁾ 國家에 있어서의普遍的인 것은 모두 個人的特殊의 利益과 知와 意志의 作用이 없이는 아무런 効力を 가지지 못한다. 또 國家에서는 모든 個人은 단순히 特殊利益과 知와 意志를 為한 知的 人格으로서만 사는것이 아니라 同時に普遍的인 것 속에서普遍的인 것을, 為해서 사는 것이다. Hegel에게 있어서는 人倫이란普遍과 特殊의 一體性이客體的制度로서 定立된 것이다.

人倫 최초단계인 家族은 人倫的 精神의 直接的, 自然的段階로써 特殊性과普遍性과의 直接的一體性이다. 市民社會에서는 特殊性과普遍性은 서로 分裂對立되고 있으며 特殊性을 原理로 하는 市民社會에서普遍性의 媒介가 나타나지만 그普遍性은 어디까지나 形式적이고 外面의인 것이다. 人倫의 最後의 단계인 國家는 家族에 있어서의普遍과 特殊의 逐次적 일체성과 市民社會에서의 對目的 分裂을 경과한 逐次차대차적 統一性을 實現하는 것이다. Hegel에게 있어서는 人間關係가 언제나普遍의인 것, 特殊의인 것, 個別의인 것의 相互關係라는 事實은 확실히 무엇보다도 根本의인 存在意味이었다. 이에 따르면 國家는 國家적으로 市民社會 및 市民社會의 差別性을 有する 不能할 수 없는 市民社會와 그 差別性은 國家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³⁵⁾

國家의 具體的普遍性 속에서 家族의 相對的個別性과 市民社會의 相對的

33) ibid. §256.

34) ibid. §260.

35) Johann Plenge; Hegel und die Welt-Geschichte, Munster, rine, 1931. p. 14.

特殊性은 비로소 그것들의 概念에 적합한 발현에 到達한다. 「살아 있는 現實性으로서의 真正한 國家는 家族과 市民社會를 前提로 하고 있고 그것들의 相對的 獨立性을 維持하고 있다.」³⁶⁾ 이와같이 Hegel에게 있어서는 市民社會와 家族의 相對的 獨立性이 國家の 具體的 本性을 害치지 않고 特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國家라는 全體의 건강과 힘을 Hegel에 따르면 家族과 市民社會라는 두 契機의 獨立性을 必要不可缺하게 前提로 한다.」³⁷⁾ 따라서 國家가 강제적으로 人倫的 根據 없이 市民社會의 기능을 制限하거나 그것을 自己의 것으로 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國家는 特殊의 契機를 自己안에 包含시켜 發展 시킬 때에만 完全한 힘으로 自身을 發展시켜 나간다. 「國家의 本質은 普遍의 인 것이다. 國家는 家族을 보호하고 市民社會을 指導하며…下位의 영역을 普遍的 實體的 精神의 領域으로 인도한다.」³⁸⁾ 國家라는 絶對普遍性은 市民社會의 特殊性을 절대적으로 保障하고, 市民社會의 特殊性은 自己의 特殊性을 追求하면서 同時에 普遍性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며 普遍性은 결코 特殊性의 媒介 없이는 抽象性에 머무르는 것이다. 「Hegel은 國家를 그의 個人的 自己와 所有를 保護하는데 있어 그들의 배타적 目的을 갖게 되는 바, 그러한 個人們로부터 成立하는 市民社會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個人の 利益이 國家의 궁극의 규정이 되며 國家의 一員이 되는 것은 다분히 任意의인 것인 것이 되게 된다. 國家는 Hegel에게 있어서 人倫的 理念의 現實性 즉 普遍性과 特殊性의 相互媒介의 統一性의 現實性이다. 즉 一般的 意志와 主觀的 欲望의 結合이다. 國家는 普遍者이기도 하지만 個別者에 對立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³⁹⁾ 이러한 關係를 신경조직과 비유해 보면 「家族은 감수성에 市民社會는 反応성에 比較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제3의 것인 國家는 自身 속에서 有機的으로 조직된 신경조직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제3자는 그속에 앞서 말한 두계기 즉 家族과 市民社會가 發展되고 있는 點에서 生命을 가지는 것이다.」⁴⁰⁾ 市民社會에서의 慾望追求의 主體인 나의 特殊的 目的과 普遍의인 것인 統一되지 않고 서는 國家는 어중간한 것인 되고 만다. 國家의 강력한 根底는 이 두계기의 統一性에 있다. 「國家의 目的是 市民의 行복에 있다. 확실히 그러하다. 만약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그들의 主觀的 目的이 充足되어 있지 않으면 國家의 基礎는 빈약한 것이다.」⁴¹⁾ 이와같이 國家의 目的是 普遍的 利益이기는 하

36) Seeberryer, op. cit. p. 617.

37) ibid. p. 617.

38) Willy Woog, op. cit. p. 336.

39) Hildegarde Trescher; Montesquieu's Einfluß auf die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r Staatslehre Hegels Altenberg, 1917. p. 94.

40) Hegel, op. cit §126.

41) ibid. §265 Zusatz.

나 그것은 特殊的 利益을 그 實體의 普遍的 利益에서 保持하는 것이다. 이러한普遍的 利益이 여러 特殊的目的 속에서 實現된다고 하는 것에서 國家의 現實性은 實現된다. 「現實性이란 恒常普遍性과 特殊性과의 一體性인데, 이 一體性은普遍性이 特殊性에로 分解되어 있어서 그 特殊性이 全體 속에서 비로소 지탱되고 지켜지는데도 不拘하고 一個의 自立의인 特殊性으로서 現象하는 것과 같은 一體性이다. 이러한 一體性이 存在하고 있지 않은限, 그 어떤 것이 비록 現實로 드러나 있다고 인정되더라고 現實의인 것은 아니다.⁴²⁾ 결국 國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이며 이 統一의 實現이 國家의 目的이다. 「Hegel은 國家와 市民社會의 問題를 本質의으로普遍性과 特殊性과 個別性이 서로 媒介하는 구조로서 다루었다」⁴³⁾ 그런데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이란 Hegel에게 있어서는 自由의 구체적 개념이다. 「自我自體는 제일 먼저 순수한 活動이며 그 自身의 아래에 있는普遍的인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는 이普遍的인 것은 그自身을 特殊的인 것으로 規定한다. 그린限에 있어서는普遍的인 것은 이미 그自身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自身을 어떤 다른것, 特殊한 것으로 定立하고普遍的인 存在이기를 그만 둔다. 그런데 셋째로는自我는自身의 制限 즉 이제 말한 다른것 가운데 있으면서 더구나自己自身아래 있다.自我는自身을 규정하면서 더욱 아직도 여전히自身아래存在를 계속하고普遍的인 것을 固守하는 일을 그만 두지 않는다. 이것이自由의具體的 개념이다.」⁴⁴⁾ 이러한具體的自由는 國家에 있어서 實現의으로 實現된다. 具體的自由란 所有와 福祉의 統一이다. 「國家는 特殊的 目的과 福祉를 達成하는 唯一한 條件」⁴⁵⁾이며 「國家의 理念은 抽象的自由로서의 權利와 이것을 充實하게 하는 内容인 福祉와의 對立이 양기되어 있는데 存在한다.」⁴⁶⁾ 이와 같은 Hegel의 國家는 「普遍性이 이미 나타나 있기는 하나 特殊性이 解放되어 있지 않은 古代的 國家」⁴⁷⁾도 아니고 「個人이 아무런 内面性도 權限도 가지지 않았던 Asia的 專制政治의 國家」⁴⁸⁾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近代國家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것은 피안적 기도교적 理想을 實現의 世界에서 實現하는 것이다. 國家에서 問題되는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은普遍的 價值의 實在를 特殊者에 依해서 實現하고, 그리고 特殊者의 價值에 대한普遍的 認定을 실현하는바 個別性이란 기독교적 理念의 구현以外의 아무것도

42) ibid. §270 Zuscitz.

43) Johann plenge, op. cit. p. 18.

44) Hegel, op. cit. §261. Zuscitz.

45) ibid. §261. Zusatz.

46) ibid. §336.

47) ibid. §260. Zusatz.

48) ibid. §261. Zusatz

아니다. 여기서는 來世에 있어서 모든 特殊者를 認定해 주는 초월적 보편자가 世界內에 內在하는 普遍者에 依해 대치된 것일 뿐이다. Hegel에게 있어서는 이런 보편자가 바로 國家이다. Hegel이 「國家를 地上의 하느님」⁴⁹⁾이라고 한 말도 이러한 觀點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이러한 國家는 普遍的인 것을 규정하고 확정하는 權力으로서의 立法權과 特殊的 分野와 個別的 發生事를 普遍的인 것 아래로 포섭하는 權力으로서의 統治權 및 이兩者를 個別的一體性으로 統一하는 最終의사決定의 主體로서의 君主權으로 구성된다.

제2절) 自主國家

Hegel의 國家는 現實的인 것으로서 本質的으로 個體的 國家이다. 그것은 「一個의 個體性으로서 배타적」⁵⁰⁾이요 「一個의 個體的 全體」⁵¹⁾인 것이다. 그러나 「한個人이 다른 모든個人들과의 關係를 缺如해 가지고서는 現實的인 人格이 아닌것처럼, 國家도 다른 모든 國家와의 關係를 缺如해 가지고서는 現實的인 個體가 아니다」⁵²⁾ 現實의이고 直接의인 個體로서 存在하는 國家는 他國家로부터 承認을 받아야만 國家로서의 現實의인 存在가 可能하다. 그러나 「承認을 얻는데 있어서는 다른 여러 國家에 對해서 自國의 承認을 要求하는 國家가 당해의 他國家를 마찬가지로 승인한다는 보증 즉 당해의 여러 국가의 獨立性을 존중할것이라는 保證이 必要하다」⁵³⁾ 따라서 한 國家가 真正한 國家로서 存立하기 為해서는 他國과의 必然的 관계속에 있게 마련이고 이 關係에 있어서의 自主性이 문제된다. 「國家로서의 民族은 實體的으로 理性的인 것임과 同時に 緝접적으로 현실적인 權利이며 따라서 地上에 있어서의 絶對的인 위력이다. 그러므로 國家는 서로 他國에 對해서 主權的으로 獨立하고 있다. 이러한 國家로서 他國家에 對해서 存在하는 것이 國家의 제일의 절대적 權限이다.」⁵⁴⁾ 國家의 個體性은 배타적인 對自存在로서 여러 外國에 대한 關係로서 나타내지만 그들 서로는 각각에 對해서 獨立하고 있는 것이다. 「이 獨立이 애말로 일국민의 제일가는 自由이며 최고의 명예이다. 여러국가가 歷史上으로 출현했을때 그것이 첫째로 갖추고 있는 權力은 따라서 獨立性이다」⁵⁵⁾ 그런대 國家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모든 國家는 特殊的인 것으로서 存在하므로 「國家關係에 있어서는 憲定, 利益, 目的, 재능, 德, 폭력, 不法,

49) ibid. §272. Zusatz.

50) ibid. §271.

51) ibid. §272.

52) ibid. §331.

53) ibid. §331.

54) ibid. §331.

55) ibid. §332.

惡德이라고 하는 内的 特殊性과 外의 偶然性이 나타날수 있는 最大의 次元에서 더 以上없이 격렬히 도량한다. 이 도량이란 그 때문에 倫理的 全體 그 自體 즉 國家의 獨立性이 偶然에 직면할 만큼의 도량이다」⁵⁶⁾ 國家의 關係가 이러한 것은 모든 國家가 서로 相對하고 있는 직접적 現實世界는 다양한 여러 關係로 特殊化되지만, 그러한 여러 관계의 규정이 쌍방의 獨立된 자의를 기본으로 해서 決定되고, 또 市民社會에 있어서는 個個人은 서로 限定 없이 서로 依存하고 있는데 對해 獨立된 모든 國家는 主로 自國에서自身을 만족시키는 全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特殊性에 立脚한 具體的 全體이기 때문에 그것은 普遍性으로 止揚되지는 않는다. 모든 國家의 關係는 各者가 主權을 原理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그 點에서 모든 國家는 自然狀態속에 있으며 國家權利의 實際 效力은 超國家的 위력으로서 制度的으로 확립된普遍的意志속이 아니라, 各者의 特殊的意志속에 있다. 「國家는 하나의 主權的 全體이기 때문에 國家間의 關係는 이 主權性을 原理로 하고 있다. 國家相互間의 法은 따라서 Hegel에 依하면普遍的인 것, 그 國家들에 힘을 行使할수 있는意志속에 그 現實性을 갖는것이 아니고 國家의 特殊한意志속에 그 現實性을 지닌다. 따라서 國家들 간에는 심판자가 없다. Kant의 國家연합에 依한 영구평화론은 Hegel에 따르면 國家들의 同意를前提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恒常個別的 國家의 特殊的, 主權的意志에 根據하는 것이며 따라서 偶然性에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⁵⁷⁾ 그러므로 「國際法의普遍的 규정은 어디까지나當爲인點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 실제는 條約에 따르는 관계와 이 關係의 破棄와의 交替이다.」⁵⁸⁾ Hegel은 國際的 條約관계를 조약을 체결하고 서로 義務를 附加시키며 이 附加한 義務를 本來있던대로 소멸시킨다고 하는 영원한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모든 國家의 同意는 도덕적 종교적 근거나 고려에 바탕을 두건 其他 어떠한 근거이든 간에 本來의으로 特殊的인 主權的意志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偶然性에 이끌린 것이다. 그런데 一國家의 特殊的對外的意志는 그 內容에서 보면 그 國家의 所有와 福祉의 統一에 대한 對內的意志이다. 따라서 이意志야말로 국가가 다른 여러 국가에 對한 태도를 규정하는 最高의 法則이다. 國家는 이와같이 구체적 보편으로서의 自由 즉 特殊性과普遍性의 統一을 為하여 所有와 福祉의 統一을 구현하고 그것에 對한意志를 그自身的 特殊的意志로서 對外的으로 表現하여 他國의 特殊意志와 對立함으로써自身的意志를 관철하고 對外的으로 自主獨立性을 確保해 나가는 것이다.

56) ibid. §340.

57) Willy Moog, op. cit. p. 344.

58) Hegel, op. cit. §333.

제3장 特殊性과 普遍性의 統一過程으로서의 世界史

「Hegel에 依하면 歷史는 人間存在에 있어서의 普遍과 特殊의 辯證法으로理解될 수 있다」⁵⁹⁾ Hegel은 「世界史는 自由意識에 있어서의 進步過程」⁶⁰⁾이며 「世界史는 自由意識을 그 內容으로 삼는 原理가 發展하는 段階行程을 表現한 것이다」⁶¹⁾라고 말한다. 이처럼 Hegel은 自由原理에 立脚하여 世界史의 궁극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Hegel에 있어서는 「自由란 하나의 규정된 存在方式에 있으면서도 本來대로 普遍의인 것 가운데로 돌아 가는 것이다.」⁶²⁾ 다시 말하면 그것은 普遍과 特殊의 統一이다. 그러므로 自由意識에 있어서의 進步過程은 普遍性과 特殊性의 統一에 對한 意識과 그 實現의 進步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世界史를 普遍과 特殊의 統一의 過程으로 理解할 때 世界史는 다음의 네 段階로 나누어 진다.

제1절) 抽象的普遍性의 段階

「古代國家들에 있어서는 確實히普遍性은 이미 發見되나 그렇지만 個人的特殊性은 아직 解放되어 있지 않고 自由스럽지 못하다.」⁶³⁾ 따라서 古代國家는 抽象的普遍性의 原理에 立脚한 것이다. 古代東洋的國家에 있어서 特殊性은 自身의 本質 속에 깊숙히 들어박힌 채로이었으며 그 個體로서의 權限을 인정받지 못했다. 東洋人們은 人間자신이 그 自體로서 自由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現實에 있어서 自由롭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만이 自由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自由는 단순한 態意, 횡포, 단순한 偶然에 不過한 것이므로 이 한 사람은 專制君主이지 自由成人이 아닌 것이다. 이 段階에 있어서는 個人的 内면성조차도 確立되지 않았고 그는 아무런 權限도 그 자신 갖지 않았다.

제2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直接的 예술적 統一의 段階

「회합적 國家는普遍과 特殊의 直接的 예술적 統一을 原理」⁶⁴⁾로 하였으며 「회합정신의 典型은 아름다운 自由의 人倫性이다」⁶⁵⁾ 회합정신은普遍과

59) Kojève, op. cit. 58.

60) Hegel, Philosophie der Welt Geschichte. Leipzig, 1920 (Lasson) p. 40.

61) ibid. p. 135.

62) Hegel,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1952, §7.

63) ibid. §260.

64) 최재희, Hegel의 철학사상. 서울(정음사) 1971. p. 159.

65) Dannenberg Friedrich, Der Geist der Hegelschen Geschichts Philosophie Langensalzae. 1923, p. 37.

哲學論究

特殊가 媒介過程 없이 直接的으로 統一된 狀態이다. 희랍人에 있어서는 自由意識이 비로소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들은 약간의 사람만이 自由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뿐, 人間이 그 自體로서 自由라고 하는것을 몰랐다. 그리하여 自由에 대한 不完全한 자각이 노예의 存在를 허용하였고 희랍人們은 그들의 生活과 自由의 維持를 為해 노예에 依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自由 그 자체는 一面에 있어서는 단순한 하나의 偶然的이고 一時的인 制限된 花이었고 他面에 있어서는 人間的인, 인도적인것의 가혹한 예속이었다.

제3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分裂의 段階

「Rome時期에 와서는 特殊와 普遍은 서로 無限히 對立하고 分裂하여 人倫을 衰失했다」⁶⁶⁾ Rome時代의 特色은 한편으로는 個人이 단순한 外面的 物件에 對한 權利의 所有者 즉 人格으로서 규정되고, 여기에 對해 황제의 단순한 支配라고 하는 抽象的 普遍性이 대치하였다. 各人格은 所有權의 主體이었지만 各人格의 人格인 황제가 一切의 所有權을 가졌으므로 個個의 權利는 無權利가 되고 따라서 이것은 人格이 自己가 現存在하는 外的 世界를 "상실했다는 것을 意味하며, 同時에 人格의 非存在를 意味한다. 「Rome의 國家理念인 바普遍的인 것은 個人들을 예속시키고 그들은 그속에서 無條件的으로 포기되어 있다.」⁶⁷⁾ 그래서 Rome에서는 「倫理的 生活은 人格的 自己意識과 抽象的 普遍性과의 양극으로 無限히 區分」⁶⁸⁾ 되어 고통과 고뇌를 經驗하게 되었다.

제4절) 普遍性과 特殊性의 具體的 統一의 段階

기독교적 German 社會에 있어서는普遍性과 特殊性의 對立은 止揚되어 기독교 精神에 依해 兩者的 統一이 實現되었다. 그러나 基督教的 精神에 依한 統一은 어디까지나 來世的 觀念的인 것이었다. 이 內的 觀念的 統一을 外的 現實에 있어서 實現하고 있는 것이 近代的인 German國家이다. Rome 時代에 있어서 人倫을 衰失하여 고통과 고뇌를 겪는 精神은 自己의 절대부정이라는 극점에 서게 되지만 精神의 이 絶對否定性이 그 內面에 있어서 無限한 肯定으로 轉換하는 것이 기독교이며 기독교에 依하여 人間的 本性과 神的 本性, 神이라는 絶對普遍性과 人間의 主觀的 特殊性과의 一體性의 意識이 人間에게 啓示된다. 「이 새로운 原理(기독교, 原理)는 그것을 들려싸고 世界史가 轉回하는 기축이 된다.」⁶⁹⁾ 이 基督教的 原理를 實現化 하는것이 近代國家의 本質

66) 최재희 ; Hegel 法哲學批判 (박종홍박사 환역기념논문집) 서울 1964. p.103.

67) Dannen berg. op. cit p. 38.

68) Hegel, Philosophie des Rechts Stuttgart, 1952, §357.

69) ibid. §260.

Hegel政治哲學의 根本課題

을 이룬다. “Hegel에 依하면 近代國家의 本質은 普遍的인 것이 特殊性과 결합하는데 있다”⁷⁰⁾ 따라서近代國家는 보편적인 것이 實現되어야 하지만 모든個人의 特殊性을 完全하고 活潑하게 發展시켜 그들 個人的 행복을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독교 출현 以後의 歷史는 바로 기독교적 原理를 세상에 실현하는 過程인 것이다.

70) 최재희, 사회철학 법문사, 서울 1963. p. 216.